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9가합53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성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열

변론 종결2020. 8. 19.

판결 선고2020. 9.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81,378,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TV 스피커 등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TV 스피커의 부품 중 하나인 '이너 와이어 어셈블리'의 제작에 필요한 하우징, 튜브 등의 자재를 제조, 공급하는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2010.경부터 원고의 TV 스피커 제조를 위한 자재 등을 공급해온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거래구조

원고는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소재한 원고의 자회사인 D(이하 'D'라 한다)를 통해 완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TV 스피커를 제조해왔다. 보다 구체적으로, D는 중국 현지에서 E, F, G 등의 사출업체에게 이너 와이어 어셈블리 등과 사출물을 결합시킨 제품을 납품받아 TV 스피커를 최종 완성시켰는데, 사출업체들은 위 납품에 필요한 이너 와이어 어셈블리를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소재한 H(이하 'H'라 한다) 등의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았고, H는 이너 와이어 어셈블리 제조에 필요한 자재를 피고로부터 공급받았다(이하 이와 같은 거래방식을 당사자들의 사용례를 반영하여 '중국 내수거래 방식'이라 한다).

다. 피고의 거래방식 변경 요청

1) 피고는 2011. 11.경 중국 내수거래 방식에 의하여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출업체의 H에 대한 대금지급이 원활하지 않아 피고에 대한 대금지급도 지체되고 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자재에 대한 대금을 직접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른바 '4자 무역 방식'의 거래를 검토하였다.

2) 4자 무역 방식에 따르면, 피고는 H에게 자재를 납품하고, 다시 H로부터 이너 와이어 어셈블리를 납품받아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며, 원고는 이너 와이어 어셈블리를 D에게 납품하고, D가 사출업체를 통해 납품받은 이너 와이어 어셈블리 등과 사출물을 결합하여 완성시키는 방식으로 TV 스피커를 제조한다[다만, 실제로는 H와 피고 사이나, D와 원고 사이의 수·출입 거래는 중국 내 보세물류원구(보세구역)에서 이루어졌고, 때문에 이와 같은 거래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TV 스피커 제조를 위한 자재, 부품 등의 물류가 실제로 이동한 경로는 중국 내수거래 방식에 따른 이동경로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라. 대금의 중복결제 사건 발생

1) 원고는 2012. 5. 24.경 이너 와이어 어셈블리 물량에 관하여, 중국 내수거래 방식에 따른

대금결제(D→사출업체→H→피고)와 4자 무역 방식에 따른 대금결제(원고→피고)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파악하고 경위를 조사하였다.

2) D는 2012. 5. 24. 자체적으로, 2012. 5. 29. 원고, H 대표 등과 함께 대금 중복결제 경위파악 및 해결방안의 모색 회의를 하면서, 일응 707,084,250원의 이너 와이어 어셈블리 대금이 중복결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C)로부터 회수하기로 결정한 바, 위 각 회의에 따른 회의록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2. 5. 24. 회의록)

2. 문제 발생 요지 및 해결방안

(2012. 5. 29. 회의록)

■ 발생원인

1. 중국내수로 기납품된 와이어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4자무역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서간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발생

2. 구체적 발생원인

D 구매부서	와이어발주	원고 구매부서	업무처리 누락(기납품 건에 대한 사후 처리밖에 안됨)
원고 구매부서	와이어발주	H	업무처리 누락(기납품 건에 대한 사후 처리밖에 안됨)
피고	와이어발주	H	당사 관계없음
H	와이어납품(중국직납)	D	4자 방식 언급 없이 납품(단 H은 사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 따라서 D는 중국내수매입처리 예정이었음
H	수출처리(보세구)	피고	업무처리 누락
피고	한국 국내매출	원고 구매부서	D 구매부서의 확인절차 누락됨.마감장/수출면장 대조없이 진행.피고는 D 구매부서와 협의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단독으로 진행해버림.
원고 구매부서	수출처리(보세구)	D	업무처리 누락(기납품된 건에 대한 사후처리밖에 안됨)

마. 피고의 지불보증서 작성

1) 피고는 2012. 6. 13.경 원고에게 중복결제된 이너 와이어 어셈블리의 결제 대금에 관하여 '귀사에 납품한 와이어 어셈블리 결제 대금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의 중복결제에 따른 금액을 환불하고자 합니다. 이너 와이어 납품의 2011년 12월~2012년 5월분에 한함. 중국에서 결제되어 한국에 입금되는 시점으로 환불함.' 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2) 피고는 2012. 6. 20.경 재차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불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지불보증서

■ 환불금액: 일금칠억육천이백육십사만이천사백오십원정(₩762,642,450)

본 회사는 환불금액 762,642,450원을 2012년 6월 30.일경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지불하겠습니다.

※ 지불시점은 중국에서 결제 후 한국 입금 시점으로 한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전체금액에서 소득세 10%(₩76,264,245)를 공제 후 지불함(실 지급액: 686,378,205원)

★ 원고의 협조사항

1) G, E, F의 우선 결제 요망

(우선결제로 H에 결제됨과 동시에 피고에 입금됨과 아울러 원고로 송금됨)

2) I, J 우선 결제 요망

(C, H의 화표발행의 비용으로 총당 ₩413,723,511)

바. 피고의 일부 지급

피고는 2012. 7. 7.부터 2012. 12. 10.까지 환불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6차례에 걸쳐 총 3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너 와이어 어셈블리 대금을 이중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원고로부터 총 762,642,450원을 부당이득하였고, 그 중 30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에서 원고가 그 지급의무를 면제한 76,264,245원(지불보증서상 공제하기로 한 소득세 10% 상당액) 및 변제충당된 305,000,000원을 뺀 나머지 돈인 381,378,2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위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민법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지불보증서에서 정한 채무이행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지불보증서 기재에 따라 중복결제된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즉, 피고는 중국에서 D가 중국 내수거래 방식을 통해 사출업체 측으로 지급된 돈을 수령한 적이 없었고, 때문에 피고는 원래 중복결제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었으나, 원고와의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원고가 사출업체 측에 잘못 지급한 돈을 피고를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지불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회수자금이 결제되어 피고에게 송금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회수자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H로부터 2012. 11.까지 회수한 돈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지만 이후에는 중국으로부터 회수자금을 송금받지 못하였으므로, 더는 원고에게 중복결제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불보증서에 따른 중복결제 대금의 반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즉, 위 대금반환의무는 (지불보증서라는) 상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성질상 상사채무에 속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가 마지막으로 돈을 지급한 2012. 12. 10. 이후 5년이 넘도록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았으므로, 위 대금반환의무는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1. 11.경부터 2012. 5.경까지 이루어진 이너 와이어 어셈블리 관련 거래분의

거래가 '중국 내수거래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 그에 대한 대금을 H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자 무역 방식'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총 762,642,4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을 제1,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4자 무역 방식'은, 중국 내 내수를 위주로 이루어지던 '중국 내수거래 방식'과 비교할 때, 거래주체들의 각 납품 및 결제 상대방이 다르고 2차례의 수출·입까지 동반하게 되는 등 비록 관념적이기는 하나 거래구조가 완전히 다른바, 이에 따라 거래주체들이 준비하여야 할 사항들도 '중국 내수거래 방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②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중국 내수거래 방식'을 '4자 무역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였지만, 이를 D에 알려 거래방식을 변경하도록 하는 등의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때문에 D는 '4자 무역 방식'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필요한 절차인 원고에 대한 이너 와이어 어셈블리의 발주절차를 실행하지 않았고, 원고도 피고에게 이너 와이어 어셈블리의 발주절차를 실행하지 않았다, 제1의 라. 항 기재 2012. 5. 29.자 회의록 기재 참조), 피고 또한 중국의 거점회사인 H에 대하여 D에게 이너 와이어 어셈블리 대금의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거래방식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더구나 H는 피고가 '4자 무역 방식'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D에게 별다른 통보 없이 중국 내수거래 방식을 전제로 직납(직접납품)을 하기도 하였다, 위 2012. 5. 29.자 회의록 기재 참조]. 이렇듯 상호 거래방식 변경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11. 11.경부터 2012. 5.경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거래방식 변경에 관한 완전한 합의 내지 그에 따른 이행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③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4자 무역 방식'에 기초하여 이너 와이어 어셈블리 대금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것은, 원고 내부의 착오에 기초하여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너 와이어 어셈블리 거래)에 따른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④ 더구나 피고는 2012. 6. 12. 원고에게 중복결제대금을 환불할 의사를 밝히고, 2012. 6. 20. 이 사건 지불보증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원고에게 한국과 중국에서 중복결제된 돈 중 10%를 공제한

686,378,205원을 2012. 11. 30.까지 반환할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앞서 본 거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가 본인에게 중복결제가 이루어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와의 협의를 통해 그 반환대금의 규모와 이행기를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에게 반환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조건부로 채무를 부담할 의사로서 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⑤ 한편, 피고는 당시 거래물량에 관한 상업송장, 세관수입화물신고서 및 포장명세서 등(을 제1호증)을 제출하며, 이들 서류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정당하게 '4자 무역 방식'에 따른 거래대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상업송장에 기재된 거래내역은 H가 D에게 어셈블리 등을 직납한 내역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4자 무역 방식'에 따른 이너 와이어 어셈블리의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또한 을 제8, 9호증(인증진술서)의 각 기재는 피고의 주장을 반복하는 내용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정이 충분치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

2)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762,642,450원에서 원고가 지급의무를 면제한 10% 상당액 76,264,245원과 피고가 2012. 12. 10.까지 변제하여 원금에 총당된 305,000,000원을 각 제하고 남은 381,378,2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지급조건 불성취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2. 6. 12.경 발송한 문서에 '중국에서 결제되어 한국에 입금되는 시점으로 환불함'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이 사건 지불보증서에 '지불시점은 중국에서 결제 후 한국 입금 시점으로 한함을 원칙으로 함'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앞서 제1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사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2012. 6. 12.자 문서를 발송하고 이 사건 지불보증서를 작성해 준 것은 본인에게 중복결제가 이루어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반환할 규모와 이행기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지불보증서에는 피고가 환불해야 할 돈의 액수와 이를 2012. 6. 30.부터 2012. 11. 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지급하겠다는 취지가 확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때문에 이에 부가된 '지불시점은 중국에서 결제 후 한국 입금 시점으로 한함을 원칙으로 함'이라는 기재는 그

본문과 함께 읽을 때 '구체적인 지급시점은 피고가 중국으로부터 결제대금을 입금받은 이후로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자연스러운 점, ④ 이 사건 지불보증서에 원고로 하여금 사출업체에게 우선 결제를 요망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이 또한 원고의 협조사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를 두고 피고의 반환의무 성립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의무에 '중국으로부터 회수자금이 결제되어 피고에게 송금될 것'이라는 정지조건이 부가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2220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채권이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피고와 사이에 거래방식의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자체로서 상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나 근본적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상사거래 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인 점, ②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협의를 통해 2011. 11.경부터 2012. 5.경까지의 거래내역을 기초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범위를 정하고, 이행기에 관하여 합의하였는바, 이는 그 내용상 상인간의 상호계산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 ③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나 피고 어느 쪽도 대금의 중복지급과 관련된 거래내역이나 회의록 외 내부조사결과 등 자료들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증인들의 기억도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보이는 등, 당시 거래에 관한 증거가 상당 부분 소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때문에 피고로서는 원고의 소제기 당시 부당이득 주장에 대하여 거래에 관한 증거로써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그로 인한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 제64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5년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가 마지막으로 원고에게 그 일부를 변제한 2012. 12. 10.로부터 5년이 지난 2017. 12. 10.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재철

판사배관진

판사강민수